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350
------	------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1)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 본 동의안은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지원의 거점마련을 위해 새로 설치하는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신진디자이너·브랜드 발굴 및 판로지원, 상호 협업콘텐츠 개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한편,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원을 최소화 하고, 제품판매 등 자체수입을 통해 필요경비를 충당하게 하여 자립경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임.

###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대표적인 도심산업인 주얼리 사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종로 주얼리산업의 집적지역 활성화와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주얼리센터 제1관에 이어 제2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종로 주얼리산업의 현황과 주얼리센터의 설립 배경

- 종로의 주얼리산업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도심형 제조업으로 종로구 3-4가 일대에 고밀도로 집적화되어 있으며 전국 주얼리 유통의 50%이상이 종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종로 주얼리산업 현황>

구 분	지 역	개소/명	비 고
사업체 수(개소)	전 국	18,895	
	서울시	6,907	36.6%(전국대비)
	종로구	3,002	43.4%(서울시대비)
종사자 수(명)	전 국	51,948	
	서울시	17,310	33.3%(전국대비)
	종로구	6,018	34.8%(서울시대비)

※ 서울시자료(2012년 기준)

- 하지만 종로구 주얼리산업은 2002년을 계기로 세계적 경기불황과 원자재값의 상승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가공기술, 디자인, 유통시스템의 낙후와 대형할인점, 온라인시장의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종로의 주얼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였고 2012년 8월 민간중심으로 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산업공동체 중심의 산업 및 특정개발 진흥지구 활성화 계획’(시장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8월 주얼리 앵커시설 설립 및 운영계획을 통하여 주얼리센터의 설립이 추진되었음.

####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종로 주얼리산업 마스터 플랜’(2013년 7월)에 따르면 서울주얼리센터는 주얼리 클러스터 일대에 보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규모의 다중심 체계로 건립하여 확산적 활력요소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주얼리센터 제1관이 2014년 12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2015년 4월 수탁기관으로 서울주얼리재단이 선정되었고 2015년 7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임.

### <서울주얼리재단 현황>

■ 설립 경위

- 7개의 전문분야(제조·판매·유통·원자재·디자인·감정교육마케팅·연구학술)의 16개 주얼리 실무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2억원) 2014년 11월에 설립되었음.

■ 조직 구성

구분	부서명	인원	비고
경영진	이사장	1	이사장 1명
	센터장	1	실무총괄자 1명
사무국	경영 및 행정지원	3	
	디자인 및 교육		
	홍보 및 마케팅		
	유통 및 제조		
	비즈니스 센터		
정보지원 센터			
감정지원연구소	감정지원	2	





■ 조직 구성

- 주소 : 종로구 서순라길 89-8(권농동)

※주얼리센터 제1관을 재단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제외한 5명의 직원은 제1관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인건비(연간 2억 5천만원)를 충당하고 있음

- 서울주얼리센터 제1관은 주얼리 감정, 홍보, 경영컨설팅, 업계 네트워크 구축 등 사무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은 디자이너를 위한 판매나 신진디자이너, 1인 스타트업, 인디브랜드 디자이너들의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임.

## <주얼리센터 제1관과 제2관의 비교>

구 분	제1센터 (비즈니스동)	제2센터 (전시체험동)
위 치	종로구 권농동 188-1	종로구 권농동 190-1
면적(㎡)	토지 236, 총면적 338 (지하1층~지상2층)	토지 311, 총면적 443 (지하2층~지상2층)
사 업 비	총 9,163백만원	
	· 토지 및 건물 매입 1,859백만원 · 설계 및 공사비 등 725백만원	· 토지 및 건물 매입 2,050백만원 · 설계 및 공사비 등 2,000백만원
	· 자산 및 물품 취득비 : 2,529백만원	
추진방법	기존건물 리모델링	한옥 신축
기 능	· 감정, 경영컨설팅, 멘토링, 업계 DB구축, 주얼리라이브러리 등 산업지원센터로서의 기능	· 주얼리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종합 활동 공간 · K-주얼리의 우수성 홍보 · 시민 및 관광객 집객
주요사업	· 실태조사 통한 업계 DB구축 · 주얼리라이브러리 운영 · 경영컨설팅단 구성 등 멘토링 · 감정지원 · 공모전, 박람회, 주얼리워크 · 홈페이지 운영, 센터 홍보 등	· 신진디자이너 발굴?육성 · 디자이너 판로지원 · 디자이너 협업콘텐츠 개발 · 디자이너 Co-working space ·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기획 (예시 : Press conference, 콜라보쇼, 브랜드 런칭쇼, 룩북 제작 등)
전		
후		

- 서울주얼리 제2관은 행정·사무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제1관과는 달리 디자이너 주얼리의 판매 기획, 디자이너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업 등 주얼리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라. 종합의견

- 주얼리센터 제2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민간위탁 이후 주얼리센터 제2관에 대한 운영의 수준이 수탁기관의 능력에 따라 하향되거나 축소 등 변경될 여지가 있어 추진체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2센터 설계변경(안)〉

구분	면적(m <sup>2</sup> )	현재	변경(안)
지상 2층	88.68	전시장, 사무실	주얼리 테마 카페
지상 1층	119.21	공방, 카페테리아	쇼룸 및 판매점
지하 1층	106.65	자료실, 체험관	체험공방
지하 2층	129.16	공동작업장, 휴게실	메이크 랩 (코워킹스페이스)

- 또한 서울시는 수탁기관에게 사업계획, 공간조성, 홍보 및 마케팅, 인력 수급 등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매출의 10%만 서울시의 세입으로 받겠다는 계획이나 수익의 산정기준 등이 불명확함.

- 특히 제1관과 달리 제2관은 수익형창출형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익사업에만 주력하여 제2관을 통한 서울시의 정책적 목적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아울러 주얼리센터 제1관과 제2관이 기능적으로 분립이 되어 있으나 종로 귀금속 클러스터와 귀금속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이 요구되며 수탁기관이 서로 다를 경우에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이 요구됨.
  - 제2관의 수탁기간을 3년(2017.4.1~2020.3.31)보다 단기로 하여 운영을 하다 제1관의 수탁기간이 종료되면(2017.12.31.) 제1관과 제2관을 통합하여 민간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50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주얼리 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동시에 가능한 대표적인 도심형 산업으로,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브랜드·디자인·패션·신소재 및 IT산업 등과 연계를 통한 국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유망산업으로 종로 주얼리산업은 주얼리산업 규모의 18%를 점유하고 있어 시의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기대되고 있으나
- 나. 세계적인 경기불황 및 원자재값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업체가 감소하고 있고 디자인 및 브랜드 경쟁력 약화, 세계적 명품브랜드의 국내외 시장 잠식, 유통시스템의 낙후로 원재료 대비 부가가치가 저조함. 특히 국내 카피 일변도의 생산환경 아래 스토리와 디자인의 부재로 디자이너 성장 어렵고 커뮤니티 부재할 실정임. 주얼리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재 유통 지원보다는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 다. 건립중인 서울주얼리센터 제2관은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 글로벌화 기반 마련 등 산업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활용, 향후 자립경영을 유도하고자 축적된 경



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설치·운영 개요

- 시설명 : 서울주얼리센터(제2관)
  -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190-2('17.3월 준공예정)
- 규모 : 토지 311㎡, 연면적 443㎡(지하2층, 지상2층)
- 공간구성(안) : 주얼리테마카페(뮤지엄), 판매shop, co-working space 등

###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17.4 ~ '20.4)
- 대상 : 주얼리 브랜드,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앵커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법인·단체·사업자 등)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 제시, 제안서 자유공모 통해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이란은 우리시 기본방향 및 주얼리 산업진흥 및 기타 공익성 고려
  - 사업계획, 공간조성, 홍보 및 마케팅, 인력 수급 등 자율권 부여
- 위탁업무
  - 신진디자이너 및 디자인 브랜드 발굴·육성
  - 디자이너 판매시설 운영

- 디자이너 상호간 협업 콘텐츠 개발
- 홍보·마케팅(프레스 컨퍼런스, 콜라보 쇼, 브랜드 런칭쇼, 룩북 제작 등)
- 시설물 관리·운영
- 기타 주얼리 산업 경쟁력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 소요예산 : 초기 1년 인테리어 및 홍보비 일부 지원, 이후 수익창출형(자립경영) 전환
  - 사업정산 : 매출의 일정부분(약10%)은 시세입, 나머지는 운영자에게 귀속하여 운영활성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사무의위탁)

####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주얼리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이 핵심이고 한류 등과 연계한 확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업트렌드를 이해하고 디자이너 주얼리 판매 기획, 유통 등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

#### 마. 기대효과

- 주얼리 디자이너 환경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디자이너 주얼리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 한류 등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산업재도약 계기 마련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얼리 판매 등 집적화 환경 구축
- 전문성 있는 시설 운영자 조기 선정으로 향후 운영의 효율화 도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의2

제13조(진흥지구에 대한 지원) ⑥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사무의 위탁) ② 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팀장	박주선(☎2133-5232)	담당	김미라(☎2133-5230)
------	-------	----	-----------------	----	-----------------